

의안번호	제 33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7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7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개최·운영과 입상자 시상 등에 관한 근거 신설(안 제26조의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)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에서 개최·운영할 수 있다.

1.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
2. 수산식품의 소비 및 창업 촉진,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식회, 요리대회, 공모전 및 경진대회
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공모전, 경진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,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)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에서 개최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</u> <u>2. 수산식품의 소비 및 창업 촉진,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식회, 요리대회, 공모전 및 경진대회</u> <u>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</u> <p>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도지사는 공모전, 경진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,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50조(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 촉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
2.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, 시식회,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
3.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
4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5. 그 밖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운영 및 행사 입상자에 대한 시상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세 출 : 행사비 지출 및 행사 입상자 시상금 지급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) 행사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시상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체

○ 추계기간 : 비용은 지속 발생 예상, 추계는 2023~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

○ 민물고기 요리강연 행사비 지출(기 추진 사업)

- 행사 운영비(홍보비 및 진행비) 및 요리 재료비 지출

○ 행사 입상자 시상금 지급(신규 추진 사업)

- 행사 연 1회 개최 및 입상자 4명(또는 4개팀)에 대한 시상금 지급 가정

※ 산출근거 : 2019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물고기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지급

나. 추계 결과

○ 산출과정

- 행사 운영비(홍보비 및 진행비) 32,000천원, 요리 재료비 3,000천원

- 행사 시상금 입상자 4명 1,500천원(최우수상 1명 * 500천원, 우수상 1명 * 400천원, 장려상 2명 * 300천원) * 1회

○ 산출결과 : 36,500천원/연,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82,5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요리강연행사	35,000	35,000	35,000	35,000	35,000	175,000
입상자 시상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재원 조달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자체 소 계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수입 지방세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
6. 작성자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연구소장 박천일